

「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6년 4월 7일

나. 발 의 자: 김원섭 의원

다. 찬 성 자: 김근한, 김민성, 김춘남, 소진혁, 이정희
장세구, 정지원 의원(7인)

라. 회부일자: 2026년 4월 8일

마. 상정일자: 2026년 4월 16일

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원 섭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2) 다른 조례와의 관계, 시장의 책무(안 제3조~제4조)
- 3)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4) 사후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- 2)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6. 4. 8. ~ 4. 14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○ 본 조례안은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5조에서,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, 사업 완료 이후에도 도시재생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안 제6조에서는, 2년마다 사후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, 선순환적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음.
- 관내 도시재생사업¹⁾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다만,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과 「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연계·운용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1) 관내 도시재생사업 현황 : 완료예정(원평동), 진행중(선주원남동, 금오시장, 선산)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

- 관련 부서에서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자생 방안을 마련하여 수립계획에 반영하고,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함.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